

## 주주 귀하

### 제 19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.  
회사 정관 제 17 조에 의거 제 19 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일 시 : 2019 년 2 월 28 일 (목) 오전 9 시 30 분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7 5 층 회의실
3. 회의 목적 사항
  - 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외부감사인 선임보고
  - 나. 부의안건 :
    - 제 1 호 의안 : 제 19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    - 제 2 호 의안 : 정관변경의 건 (별첨 1. 정관변경 신규대조표 참조)
    - 제 3 호 의안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
    - 제 4 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(별첨 2. 이사선임 세부내역 참조)
    - 제 5 호 의안 : 임원퇴직금지급 규정 변경의 건
    - 제 6 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    - 제 7 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4. 경영참고사항 비치  
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본점에 비치하오니 참조 바랍니다.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
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.
6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  - 직접 행사 : 신분증
  - 간접 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, 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), 대리인 신분증

2019 년 2 월 13 일

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

주식회사 에빅스젠

대표이사 유 지 창

관 인  
생 략

**별첨 1) 정관변경 신규대조표**

개정 전	개정안
<b>제 2 장 주 식</b>	
<b>제 5 조(발행예정주식총수)</b>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,000,000 주로 한다.	<b>제 5 조(발행예정주식총수)</b>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,000,000 주로 한다.
<b>제 6 조(1 주의 금액)</b> 주식 1 주의 금액은 5,000 원으로 한다.	<b>제 6 조(1 주의 금액)</b> 주식 1 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.
(신설)	<b>제 9 조의 2(주식 등의 전자등록)</b> 회사는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
<b>제 8 조의 2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</b> (생략) ⑩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그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써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종류주식의 주주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1. 종류주식의 주당 상환금액은 해당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 복리 15% 이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, 기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 2.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(이하 "상환기간")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특정시점까지의 기간범위를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	<b>제 8 조의 2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</b> 2.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(이하 "상환기간")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xx 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<b>제 10 조(신주인수권)</b> ① 이 회사가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 (생략) 5.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, 판매, 자본채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(생략) (신설)	<b>제 10 조(신주인수권)</b>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5.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, 판매, 자본채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. 상장 시 대표주관사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
<b>제 10 조의 2(주식의 소각)</b>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.	<b>(삭제)</b>

<p><b>제 10 조의 3(주식매수선택권)</b></p> <p>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상법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(생략)</p> <p>④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 542 조의 9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. 다만, 회사 또는 제 3 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)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</p>	<p><b>제 10 조의 3(주식매수선택권)</b></p> <p>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상법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(생략)</p> <p>④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 542 조의 9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. 다만, 회사 또는 제 3 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)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</p>
<p><b>제 10 조의 5(준비금의 자본전입)</b></p> <p>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.</p>	<p><b>(삭제)</b></p>
<p><b>제 11 조(명의개서대리인)</b></p> <p>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</p>	<p><b>제 11 조(명의개서대리인)</b></p> <p>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,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</p>
<p><b>제 3 장 사 채</b></p>	
<p><b>제 14 조(전환사채의 발행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 억원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(생략)</p> <p>5.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·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	<p><b>제 14 조(전환사채의 발행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(생략)</p> <p>5.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벤처특별법 제 2 조의 2 제 1 항제 2 호 가목의 1 에 해당하는 벤처금융 또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제 17 호에 따른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
<p><b>제 15 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이 5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(생략)</p> <p>5.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·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	<p><b>제 15 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(생략)</p> <p>5.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벤처특별법 제 2 조의 2 제 1 항제 2 호 가목의 1 에 해당하는 벤처금융 또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제 17 호에 따른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

<b>제 4 장 주주총회</b>	
<b>제 19 조(소집통지)</b>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단, 주주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위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단서조항 삭제	<b>제 19 조(소집통지)</b>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단, 주주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위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<b>제 5 장 이사·이사회·대표이사</b>	
<b>제 33 조 (이사의 직무)</b>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	<b>제 33 조 (이사의 직무)</b>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(사장)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(사장)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b>제 35 조(이사회외 구성과 소집)</b>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(사장)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④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. (신설)	<b>제 35 조(이사회외 구성과 소집)</b>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(사장)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④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. ⑤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<b>제 39 조(대표이사등의 선임)</b>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, 부사장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.	<b>제 39 조(대표이사등의 선임)</b>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<b>제 7 장 회 계</b>	
<b>제 48 조(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)</b> ① 대표이사(사장)는 상법 제 446 조 및 제 447 조의 2 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(신설)	<b>제 48 조(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)</b> ① 대표이사(사장)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(신설)	<b>제 52 조(외부감사인의 선임)</b>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,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(신설)	<b>제 1 조(시행일)</b> 이 정관은 2019 년 02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.
(신설)	<b>제 2 조(상장회사 특례조항의 적용)</b>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회사의 주식시장 상장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(신설)	<b>제 3 조(전자증권법의 적용)</b> 전자증권법에 관련된 조항은 해당 법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**별첨 2) 이사선임 세부내역**

성 명	출생 년월	임기	신규선임 여부	상근 여부	주요경력(현직포함)
유지창	1959. 02.13	3 년	재선임	상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현) 가톨릭대 교수(병리학)</li> <li>- (현) 에빅스젠 대표이사</li> <li>- (전) Stanford University Research Fellow with Dr. Paul Berg(노벨수상자)</li> <li>- University of Colorado 바이러스학 박사</li> <li>- 연세대학교 생화학과</li> </ul>

추천인 : 이사회

# 주주총회 위임장

## 대리인

성 명 :

주민등록번호 :

본인과의 관계 :

본인은 주식회사 에빅스젠의 주주로서 제 19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이 모든 권리를 위임합니다.

- 다 음 -

1. 의결권 있는 주식수: 주

2. 위임사항 :

- 1) 보유한株式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결 권리
- 2) 주권 및 배당금 등 수령에 관한 모든 사항

20 년 월 일

## 위임인

주주명 : (인)

주민(법인)등록번호 :

별첨 : 인감증명서 1 부

주식회사 에빅스젠 귀중